KOSHA GUIDE

M - 171 - 2013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의 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2013.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근오
- 제·개정 경과
 - 2013년 11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HSE HSG 261, Health and safety in motor vehicle repair and associated industries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6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8장 자동차정비 용 리프트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 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3년 11월 29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의 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작업안전에 관련된 주요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성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한 기술적 상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자동차의 수리, 정비 시에 사용되는 자동차정비용 고정 설치식 리프트의 사용에 관하여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2주식 리프트(Two-post lifts)"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 기둥, 보조기둥 두 개의 수직 지지기둥이 있는 리프트를 말한다. 두 지지기둥에 모두 적재팔이 두 개씩 있으며 이 적재팔은 지지기둥 부분에 위치하고 길이조절이 가능하며 일부는 관절 형태이다. 각 적재팔의 끝 부분에는 픽업패드가 씌워져 있는 조절 가능한 픽업판이 있다. 주로 엔진/미션 탈·부착 등 하체정비 시 사용된다.
 - (나) "4주식 리프트(Four-post lifts)"라 함은 차량하부에서 정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4개의 기둥을 설치하고 2개의 승강장에 정비차량을 탑재하여 유압실린더로 들어 올리는데 사용하는 리프트를 말한다.
 - (다) "시저스 방식 리프트(Scissors lifts)"라 함은 차량 하부에서 정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승강장에 탑재된 정비차량을 링크구조의 유압실린더로 들어올리는 데 사용되는 리프트 이다. 주로 엔진/미션 탈·부착 등 2주식 리프트와 유사한 작업

KOSHA GUIDE

M - 171 - 2013

용으로 사용된다.

- (라) "정격하중"이란 리프트 적재장치가 운반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 (마) "암 고정장치(Arm locking device)"라 함은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안전장치 중의 하나이며 리프트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불시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록킹되는 장치를 말한다.
- (바) "잭(Jack)"이라 함은 기어, 나사, 유압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기구를 말한다.
- (사) "0정지방식"이라 함은 구동부의 작동을 정지시킴과 동시에 구동부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을 말한다.
- (아) "적재팔(Lifting arm)"이란 2주식 리프트 장치에서 한 쪽은 지지기둥에 부착되고, 한쪽은 차량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을 말한다.
- (자) "픽업(Pick-up)패드"란 별도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은 채 필요시 플랫폼과 차량 사이에 끼워 넣는 패드를 말한다.
- (차) "픽업(Pick-up)판"이란 2주식 리프트 등에서 차량의 하부와 적재팔이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판을 말한다.
- (차) "프롭(Props)"이란 높이를 조절하여 고정할 수 있는 차체 지지대, 쇠막대 형태의 소도구를 말한다.
-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위험요인

- (1)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작동 중 작업자의 신체일부가 끼임에 의한 위험
- (2) 차량의 리프팅 작업 중 차량의 떨어짐에 의한 위험
- (3) 리프트 구조물에 부딪힘 등에 의한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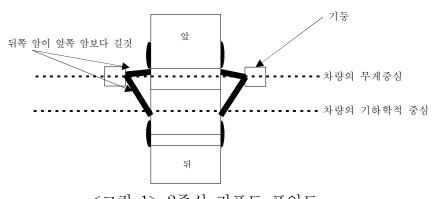
5.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장치의 사용 안전

5.1 일반사항

- (1) 작업자가 작업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한 안전잠금장치가 올바르게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2) 리프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3) 시멘트 앵커 볼트가 느슨하거나 리프트의 구성요소에 결함이 있거나 마모가 발견된 경우 리프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4) 리프트 아래에 사람이나 장비가 있는 경우 리프트를 작동하여서는 안 된다.
- (5) 작업자는 리프트를 내리거나 올릴 때에는 2 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6) 리프트를 모든 안전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상승된 상태로 두지 말아야 한다.
- (7) 잭 스탠드 또는 다른 하중지지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 (8) 차량을 들어올리기 전에 차량의 문, 트렁크, 보닛 등이 닫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2 2주식 리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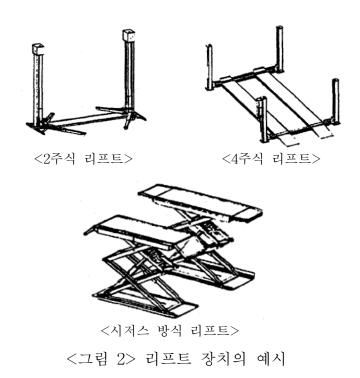
- (1) 2주식 리프트는 평평한 표면에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2) 차량을 들어올릴 때는 차량 제조자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특히 큰 SUV(Sports utility vehicle)나 경량 화물차, 상업 밴을 들어 올릴 때에는 차량에 적절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 (3) 차량 섀시와 섀시 잭 포인트가 확인 가능해야 하며 차량 잭포인트의 경우 문틀에 있는 표시를 확인하고 만약 의심스러우면 항상 차량 안내서를 확인해야 한다.
- (4) 차량을 들어올릴 때는 지지암 픽업패드가 사용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령, 적재팔 때문에 차량 차체가 찌그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들어올리 기 전에 적절한 높이로 설정해야 한다.
- (5) 적재팔은 매번 리프팅 이전에 조심스럽게 배치해야 하며 차량 제조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는 올바른 중량 분배와 하중지지 지점에 올바르게 위치하게 함으로써 차량이 안정적 위치에 있도록 해야 한다.(<그림 1> 참조)
- (6) 차량의 하중 분배를 고려할 때에는 전면/후면 엔진 위치, 차량 내 하중, 엔진이나 기어박스와 같은 주요 부품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 (7) 차량의 주요 부품 제거 또는 공구에 의해 가해지는 힘으로 인한 차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8) 작업 전 적재팔의 암 고정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그림 1> 2주식 리프트 포인트

5.3 4주식 리프트, 시저스 방식 리프트

- (1) 리프트 작동중에는 작업자의 신체일부가 위험반경 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 (2) 리프트를 사용하기 전에 바퀴 스토퍼, 고정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 (3) 차량 아래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이동이 가능한 보조전등 등을 이용하여 작업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5.4 잭(트롤리 잭 포함)

- (1) 들어 올릴 차량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잭이어야 하고 차량의 제조자가 명시한 밑면의 올바른 잭 포인트에 적용될 수 있는 적합한 잭을 사용해야 한다.
- (2) 잭을 사용하여 차축을 들어 올리는 경우에는 차량 하부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적절한 지지대로 보조지지를 하여야 하며 바닥에 닿은 바퀴에 고임목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잭은 단단한 평지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 (4) 사용자는 잭이 올바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 (5) 사용자는 잭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잭의 사용에 관한 훈련 받아야 한다.

5.5 램프(Ramps)

- (1) 짧은 휴대용 램프의 경우 차량을 정지된 위치에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2) 긴 램프의 경우 차량을 놓은 수평 위치에 유지시키는 용도로 사용 하여야 한다.
- (3) 램프는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야 하며 자체적으로 램프를 제조한 경우 바퀴 브레이크, 받침 등을 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5.6 프롭(Props)

- (1) 프롭의 일반적인 형태는 소도구로서 차체 지지대이거나 쇠막대이다. 프롭은 스탠드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핀이 함께 제공되는데 이 핀을 잃어버리거나 핀이망가진 경우 해당 사양에 가장 잘 맞는 핀으로 교체해야 하며 드라이버, 볼트 등과 같이 적재 용량을 알 수 없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 프롭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트롤리 잭과 같은 리프팅장치로 들어 올린 차량 밑에서 작업자들이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 (3) 여러 잭을 활용해 들어 올린 휠 프리 상황의 차량을 지지하는데 프롭을 사용할 수 있다. 프롭은 단단한 평면에서 사용해야 하며 프롭 위에 적재된 하중을 올바르 게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4) 차체 지지대의 구조와 안정성, 용접된 접이 부분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 (5) 대형 수송차 운전석을 앞으로 기울이고 정비를 할 경우에는 프롭을 사용하여 보조지지를 하여야 한다. 프롭의 사용 전에는 프롭이 해당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야한다.
- (6) 트럭의 적재함을 올리고 그 차량의 하부에서 정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프롭을

KOSHA GUIDE

M - 171 - 2013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지지시켜야 한다.

6. 자동차 수리·점검 작업 시 안전대책

6.1 차량의 시동

엔진의 시동은 반드시 운전자가 운전석에 완전하게 탑승하여 핸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기어는 중립에 놓고 걸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 밖에서 시동을 거는 등위의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리프트 등에서 차량이 떨어지거나 열린 문이 리프트 기둥을 치고 사람과 충돌하여 치명적인 부상을 야기 시킨다.

6.2 차량의 이동 및 점검

고객이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작업자가 접근이 제한되거나 시 야확보가 잘되지 않은 혼잡한 작업장의 안이나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분명한 위험요인이 있다.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의 이동 및 점검 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1) 차량의 이동 및 점검을 하는 작업자는 차량점검에 관한 모든 훈련. 운전면허, 정비 자격증 등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특히 고성능 차량의 경우에 더욱 주의 를 해야 한다.
- (2)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 키를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 (3) 제한된 공간이나 잘 보이지 않는 코너, 특히 후진할 경우에는 차량의 이동을 감독해야 한다.
- (4) 운전하는 작업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정비하는 차량의 운전에 익숙한 자이어야 한다.

6.3 안전장치 정상 작동여부

작업자는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가 정상으로 작동하는 지에 대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 (1) 각 조작위치에는 작동 시 모든 인양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0정지방식의 비 상정치장치
- (2) 리프트 조작버튼의 가동유지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 (3) 리프트의 하중인양장치의 과상승 방지를 위한 장치
- (가) 하중인양장치를 직접 구동시키는 유압실린더의 오버플로우
- (나) 기계 구동식 리프트장치의 리미트 스위치
- (4) 리프트의 외함 및 철대의 전기절연 상태
- (5) 차량이 리프트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퀴 고임이나 멈춤장치
- (6) 비상정지장치가 정상작동 되는 지 여부

6.4 차량 하부에서의 작업

- (1) 차량의 하부 공간에 정비 작업을 하는 때에는 차량의 상태와 지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2) 차량을 잭 등으로 들어올린 경우에는 작업자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정비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6.5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선택

- (1) 차량을 들어올릴 때에는 다양한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2주식 또는 4주식 리프트를 사용한다. 이 이외에 단일, 3주식, 6주식의 기둥이나 시저스방식 리프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 해당 차량의 정비부위와 차량 자체의 적합한 리프트를 선택하여 차량을 들어 올려야 한다.
- (2) 해당 작업에 적합한 리프트의 선택이 어려울 때에는 리프트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해야 한다.

6.6 리프트 운전자 주의사항

리프트 운전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1) 승인받은 사람 이외의 임의조작을 금지해야 한다.
- (2) 정비 등의 작업 등 취급 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해야 한다.
- (3) 하중인양장치 및 인양팔의 운동범위에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 (4) 인양 후 차량 안착상태의 확인 등의 안전확인을 해야 한다.
- (5) 인양작업 중 리프트의 작동상태를 감시해야 한다.
- (6) 리프트 작동중에는 위험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7) 리프트에 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6.7 들어 올려진 차량의 정비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차량이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작업자가 접근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주

의해야 한다.

- (1) 해당 차량 점검 적합한 정비용 리프트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 (2)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오로지 훈련받은 공인 정비사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위의 차량을 점검할 때 초크, 잭, 프롭의 배치, 과적 방지 등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4)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를 사용하기 전에는 잭과 차축 지지대의 적절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리프팅 장비들의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를 해야 하며 이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